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9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고,

발전용 연료인 천연가스와 유연탄의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2월 29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라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단서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의2(탄력세율) ①-----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u>2023년 12월 31일까지</u> 는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한다.	3. ----- -----. ----- <u>2024년 2월 29일</u> ----- -----.
4.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할 탄력세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4. ----- -----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발전용 물품(가목 및 다목의 물품은 제외한다): <u>2023년 12월 31일까지</u> 킬로그램당 10.2원	라. ----- ----- <u>2024년 6월 30일</u> ----- -----
5. 별표 1 제6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5. ----- ----- -----
가. 순발열량(純發熱量,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흡수한 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 이	가. ----- ----- ----- -----

하 이 호에서 같다)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킬로그램당 49원. 다만, <u>2023년 12월 31일</u>까지는 킬로그램당 41.6원으로 한다. 나.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이상 5,5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u>2023년 12월 31일까지</u> 킬로그램당 39.1원 다.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킬로그램당 43원. 다만, <u>2023년 12월 31일까지</u>는 킬로그램당 36.5원으로 한다. 6. (생 략) ② · ③ (생 략)	----- ----- ----- --. ---- <u>2024년 6월 30일</u> ----- -----. 나. ----- ----- ----- <u>2024년 6월 30일</u>----- ----- 다. ----- ----- -----. -- <u>2024년 6월 30일</u>----- -----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31